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2판(2023.9.8.)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12-1판)

2024. 1. 15.



보건복지부

목 차

I. 개 요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사항	4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5
5.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5
III. 지자체 협조사항	7
▷ 참 고 ◁	
1.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8
▷ 서 식 ◁	
1. (서식1) 장기요양기관 건강 모니터링 (삭제)	11
2. (서식2) 접촉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12
3. (서식3) 방문자건강 모니터링	13
4. (서식4)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표	14
5. (서식5) 소독 실시 대장 양식 (삭제)	15
6. (서식6) 환기 실시 대장 양식 (삭제)	16
▷ 부 록 ◁	
1.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7
2.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방지를 위한 환기 가이드라인	19
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소독 방법	25

I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 시행) 및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4.1.1.)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방역관리 방향 제시

* 동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2024.1.1.)에 따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의 생활방역 수칙 (권고) 수준 유지

2. 기본방향

-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원칙,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장기요양기관 운영 범위 조정

* 지자체에서 지역별·시설별 유행상황 및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의 방역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22.4.18, 중대본))

-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생활시설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등의 방역조치*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규 입소자(입소 시) 선제 검사 유지, 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접촉 대면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유지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하여 근무자 등 출입자 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토록 함
 - * 방역관리자 : 시설 내 방역관리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 ** 방역관리자는 유튜브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면회객·자원봉사자·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주 1회 점검(서식 4)
- (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 * 장기요양기관-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 의료기관
- 시설은 확진자 다수 발생, 방역 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시설 이용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관리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실시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일 1회 이상 권고)
 - * 문손잡이, 난간, 스위치 등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일 3회 이상, 매회 10분 이상 권고)
 - * 환기는 상시로 하되 냉난방기 사용 시 1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
-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충분히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자가진단키트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②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스크 의무 착용
- ③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상황별 권고 마스크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우선) 권장	사용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사항

□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후 출입하며,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의 출입 자제

○ 시설장의 판단하에 외부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 외부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는 유증상 시, 출입 전 자가진단 키트(RAT) 검사 실시

* 실습생은 시설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시설·장비 보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및 증상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실시(서식3)

□ 시설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시설 입소자·이용자는 1일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 확인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

* 기관 자체 모니터링 양식 사용 가능

○ 종사자는 출근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권고)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3) 입소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종사자는 5일, 입소(이용)자는 7일 격리를 권고

* 위기단계 하행(심각→경계, 2023.6.1.)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지침

4. 시설 거주자의 면회, 외출·외박,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접촉 면회 허용(참고1 면회수칙)

- * 사전예약제, 실내 마스크 착용, 면회객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권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 (외출·외박) 접촉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외박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하고 증상 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필요
- * 외출 복귀는 증상 있을 시에만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프로그램 등 운영)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실시
- * 접촉력에 관계없이 외부 강사 출입 가능. 단, 증상 있을 시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출입

□ (이용시설 내 취식) 테이블 간 적정거리 준수(띄워 앉기 등)

5.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대응원칙) ①의심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 ②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시설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함
- (의심)환자는 격리 공간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등) 사용하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필요시, 시·군·구(보건소)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

- (의심)환자의 이송 또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소독

※ 종사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 확진환자(입소자)와 접촉자(종사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사전에 지정한 임시격리장소 및 방역관리자를 활용하여 기관 내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내
- 소독제 종류 및 소독 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마련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이용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Ⅲ

지자체 협조사항

-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할 장기요양기관과 지속적 소통 체계 유지
-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다수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신고를 위한 시군구-장기요양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집단 감염·확산 등 감염병 발생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 제외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
- ※ 지자체 간 역할 정립에 대해서는 양 자치단체 협의 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 (돌봄제공)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휴관 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안부전화, 도시락 등) 마련,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 활용 통해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운영 재개 등)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 사전 조치 신속 시행(지자체·시설)
 - ※ 조치사항 :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시설 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 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대상 등 결정
-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동원 가능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 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세부 사항 결정

참고1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8.31일부터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이 권고로 전환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③ 면회 실시 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손 소독 의무,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서식3)

④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⑤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소독·환기 등을 위해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사전준비

-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5. 면회 당일 현장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야외 포함)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손 소독제 입구 비치, 손 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면회 중 준수사항

-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 ②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는 취식 허용

□ 면회공간 관리

-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서식1

장기요양기관 건강 모니터링 <삭제>

서식2

접촉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오후	38℃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1) 임상증상 기록지는 4주 보관 후 폐기

서식3

방문자 출입 명부 및 건강 모니터링 (예시)

[illegible]

- 1)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2) 수기 명부는 개인정보이므로 4주 보관 후 즉시 안전하게 폐기

서식4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표(주1회 점검)

시설유형	시설명	점검일	점검자
분야	방역실태 점검표	점 검 결 과	
(1) 방역 계획 수립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역할 분장, 시설 내 방역계획 수립 여부 ☐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및 작동 가능 여부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2) 종사자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 종사자 방역지침 숙지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3) 입소자 관리	☐ 신규입소자 사전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RAT) 및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등 이력 관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감염 여부 확인(일일 발열체크 등) 및 대응 절차 마련·시행 여부 ☐ 외출·외박자 관리 적정 여부 * 외박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및 모니터링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4) 면회 기준	☐ 면회 방법 및 면회실 관리 여부 * 사전예약제 운영, 면회수칙 사전 안내,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손소독제 구비 등 ☐ 면회객 방역수칙 준수 여부 *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5) 기본 방역 수칙	☐ 방역물품 충분한 구비 및 적정 배치·사용 여부 * 손 세정제, 소독제, 진단키트 등 ☐ 주기적 환기 및 소독실시(위탁포함) 여부 ☐ 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관리 여부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 양호 ☐ 미흡 * 조치결과 작성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서식5

소독 실시 대장 양식 <삭제>

서식6

환기 실시 대장 양식 <삭제>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①과 기저질환자^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걸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마스크 선택법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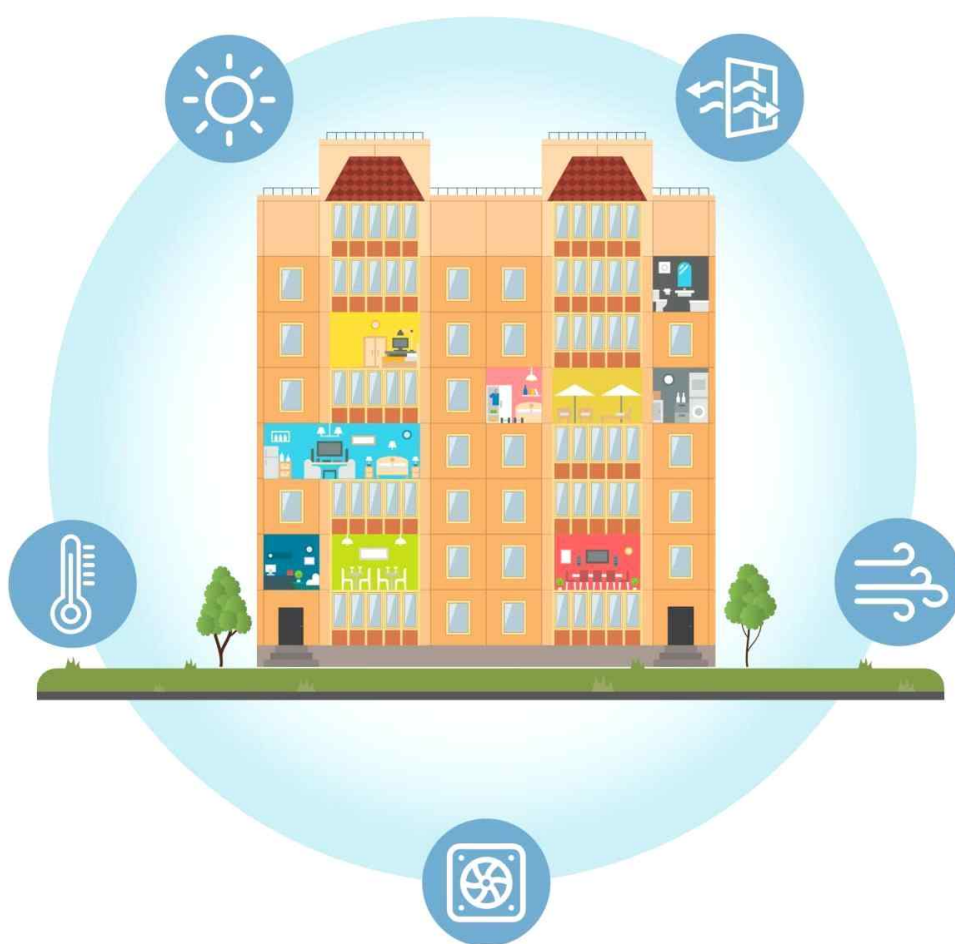
마스크 폐기법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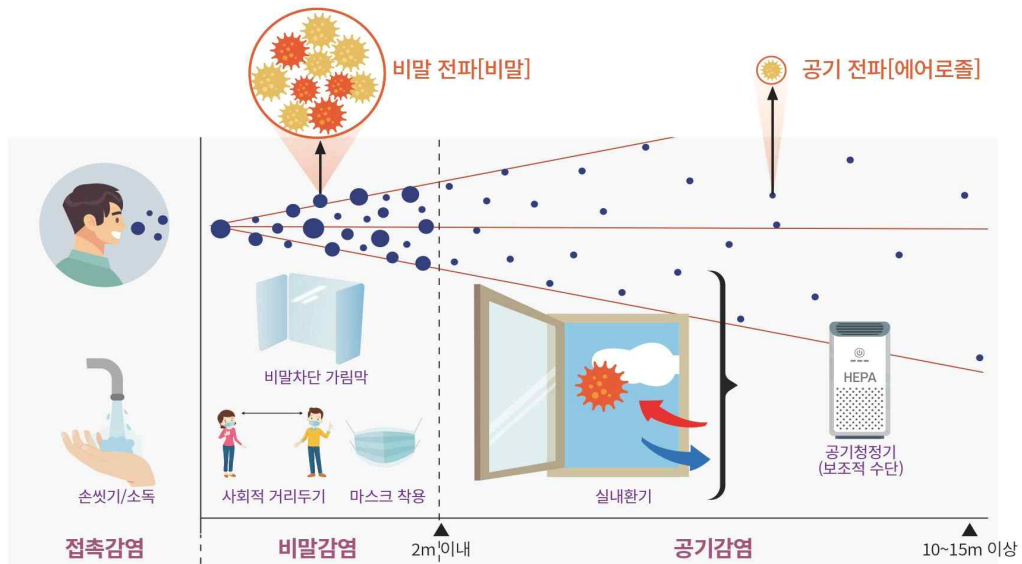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입자 확산특성과 예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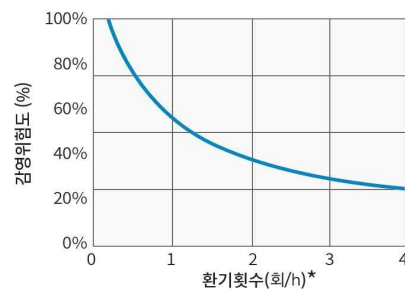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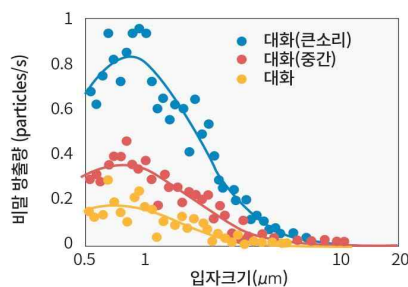
|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

- 5 μ 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 μ m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가능
-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출처:NEJM, 2000)
 - 접촉 및 비말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
 - 건물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



| 활동량에 따른 비말방출량 및 환기에 의한 감염위험도 변화 |

-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체육시설 및 카페 등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감염위험도가 높음
- 환기량*(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이 커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의 자연환기시(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3회 환기횟수 확보) 오염물질 농도 및 감염위험도 1/3로 감소



*환기량은 외부공기가 실내에 유입·유출되는 양으로, 환기횟수 1회/h는 1시간에 실내체적 만큼 유입·유출되는 환기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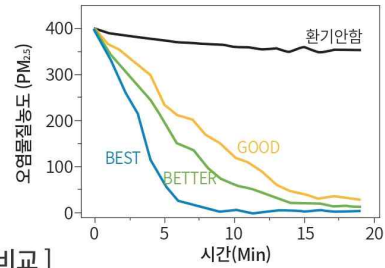
2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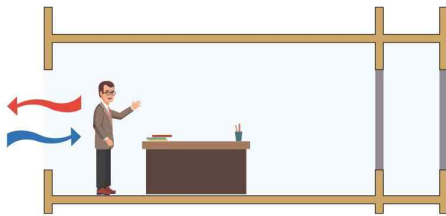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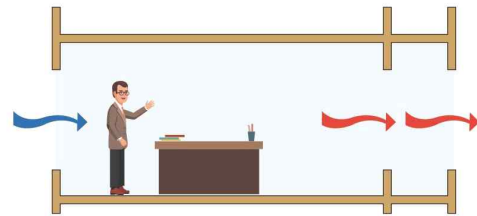


| 중복지 형태의 건물(학원 등)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

-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되, 자연환기시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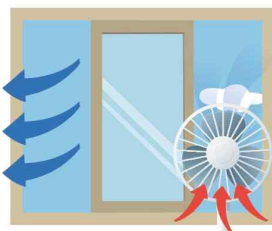


[학원 수업중 자연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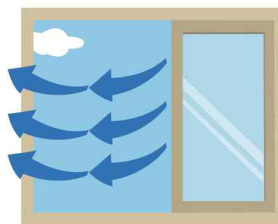
[학원 쉬는시간 자연환기 방법]

|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1개인 경우 환기방법]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2개인 경우 환기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유형별 환기가이드라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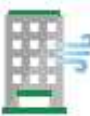
|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일반원칙 |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등 실내유해물질 제거
 -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및 환기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
 - 공기청정기 활용시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



|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내부순환모드 지양),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
- 건물내 중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

건축물 및 환기설비 유형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사무소, 쇼핑몰, 병원 등]	 환기시스템 가동 확인	 외기도입 극대화	 사용전 유해물질 배출	 내부순환 금지	 화장실팬 상시 가동
 [소규모 점포]	 자연 환기(수시)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위생배관 봉수 확인	
 [다중이용시설]	 자연 환기(상시)	 기계설비활용 환기량 증대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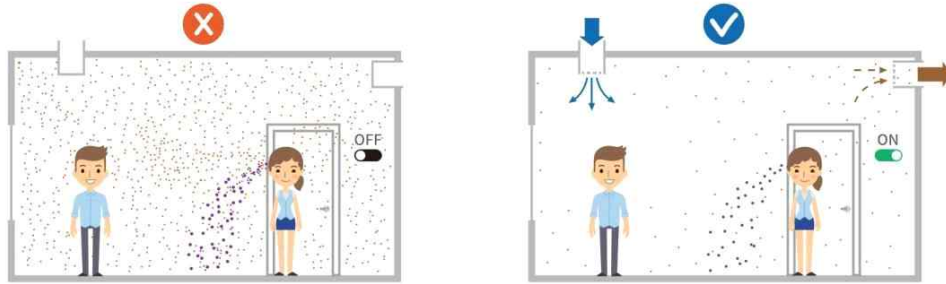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순기호본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

4

| (내부순환모드 지양)외기도입량 100% 및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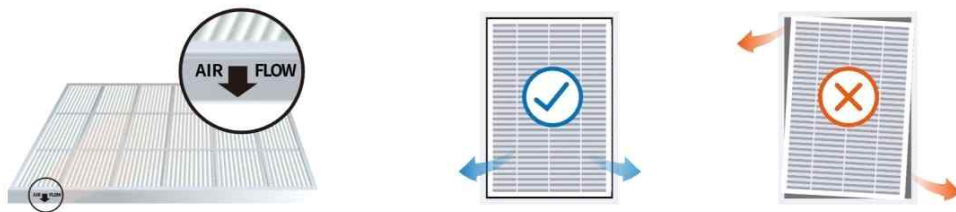
-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 내부순환모드 지양(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화)

구분	내부순환모드	혼합모드	전외기 급기 / 전배기 모드
시스템 구성도			
취출구능도 측정사례			

-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방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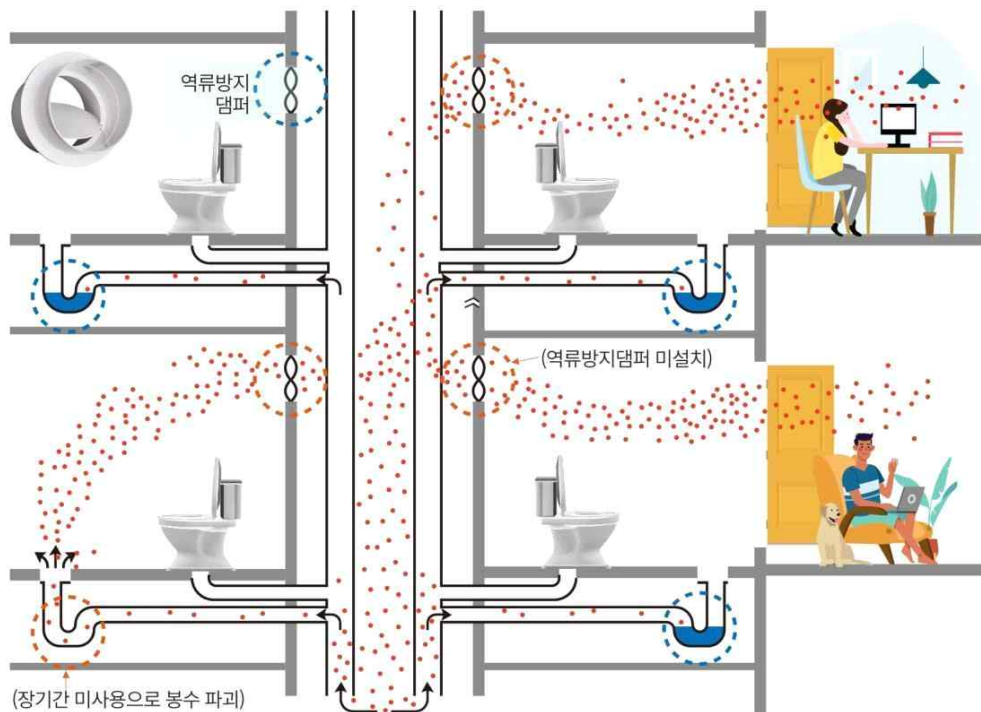
| 실내공간에서 음압형성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가능 |

-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오염물질 유입가능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 가동시 자연환기 병행



|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점검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
-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021.01.13.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9

2021.01.1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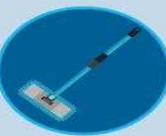
준비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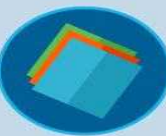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월)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3/9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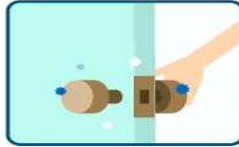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4/9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5/9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6/9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찬물 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7/9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8/9